

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

의안 번호	26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4년 3월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가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를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여,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음. (대법원 2000.5.30. 선고99추85판결)

2. 주요내용

가.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6조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6조(권한의 위임 등)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·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2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시행령 제73조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시행령 제73조(권한의 위임)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

- 예고기간 : 2024. 2. 1. ~ 2. 21.

-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) 비용추계 등 자료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

3) 인권/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 결과

- 인권영향평가 : 원안동의

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-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

- 아동영향평가 : 해당없음